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

문서번호	세무2과-8586
결재일자	2015.5.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지방소득세2팀장	세무2과장	기획재정국장	
양진영	안미미	박재순	05/06 김종순	
협조				

- 2014년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

# 신고·납부 안내 및 홍보 계획



성 동 구

(세무2과)

# - 2014년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

## **신고·납부 안내 및 홍보 계획**

2015년 5월은 2014년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적극적인 납세홍보를 통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여 세입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 **I | 개 요**

- 시 행 근 거 : 서울특별시 세무과-9966호(2015.4.29.)  
『2015년도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달 운영계획』
- 세 목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 납세의무자 : 성동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으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납 세 지 :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거소지 관할 구청
- 과세표준 : 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 세 율 : 소득세율의 10% 수준 누진세율
- 신고·납부기간 : **2015. 5. 1. ~ 6. 1.** (5/31 일요일로 인한 납기연장)
  - ※ 성실신고 대상자 : 2015. 5. 1. ~ 6. 30.
  - ※ 연말정산 대상자 중 타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5.6.30일까지 신고가능하게 소득세법 개정중(2015. 5.7. 국회 통과 예정)

## **II | 예상 신고·납부 건수 및 세액**

- 세입목표 : 9,838백만원
- 확정신고 건수 및 세액(예상): 16,191건 / 72억원

## ■ 전년도 신고납부 현황

(단위: 건/백만원)

년 도	합 계		수기납부		전자납부		전자납부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4	17,384	9,183	13,657	7,371	3,727	1,812	21.4	19.7
2013	14,999	5,284	11,890	4,279	3,109	1,005	20.7	19.1

※ 2014년은 전년대비 금액 43.5% 상승, 재개발 아파트의 입주로 인한 구민증가와 갤러리아포레 등 고급아파트의 고소득자 유입으로 세수 증가

## III | 추진 내용

- 서울시 이택스(ETAX) 및 국세청 홈택스(HOMETAX)를 이용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적극 홍보
- 친절한 납세민원처리 및 신속한 안내(납세상담소 설치)
- 홈페이지, 지역언론, 반상회보 등 언론매체를 통한 납부 홍보 강화

## IV | 중점 추진 사항

- 신고·납부안내 및 홍보 철저
  - 홍보기간 : 2015. 5. 1. ~ 6. 1.(5/31 일요일로 기한연장 특례 적용)
  -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 국세청에서도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에 지방소득세도 함께 안내하여 4월말 발송
    - 관내 대형사업장, 아파트관리소에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안내문 게첩 협조 요청
  - 관내 세무대리인에 대한 협조 요청
    - 관내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소득세 신고·납부 대행시 지방소득세도 동시에 신고·납부 하도록 협조 요청
    - 국세청 홈택스(HOMETAX)에서도 종합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 가능함을 홍보

- 보도매체를 활용한 홍보(공보담당관 및 전산정보과에 협조 요청)

- 구청홈페이지, 성동구소식지 등에 게재(홍보문안 별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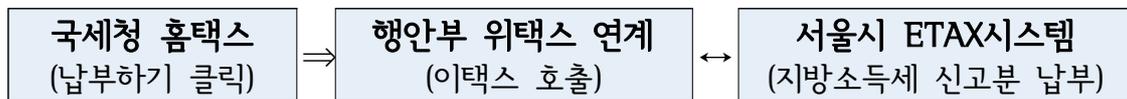
## ■ 서울시 이택스(ETAX) 등을 통한 신고·납부 적극 홍보

- 현행 수납부서는 수납 처리에 많은 시간과 인력 소요
- 서울시 이택스(ETAX) 및 국세청 홈택스(HOMETAX)를 통한 전자신고·납부 방법 적극 홍보
- 국세(종합소득세)와 동시 지방소득세 납부

### < 신고납부 체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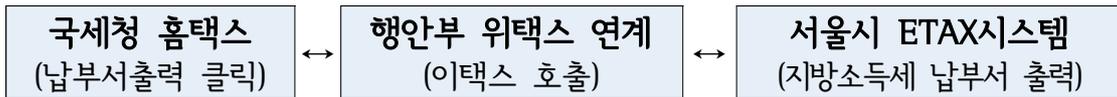
#### ▶ 홈택스에서 「납부하기」클릭시 바로 ETAX 납부 가능

- 서울시분 경우 위택스에서 회원확인 없이 바로 ETAX 화면에서 전자 납부 가능



#### ▶ 홈택스에서 「납부서출력」클릭시 ETAX에서 납부서 출력서비스

- ETAX 출력 납부서 서식 개발 : 수납용 2차원바코드 및 전용계좌번호 생성 출력



- 국세(종합소득세)와 별도 지방소득세 납부

- 서울시 ETAX시스템을 통해 ‘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를 이용한 전자납부 또는 납부서 출력에 의한 금융기관, ATM 등 납부

## ■ 납세상담소 설치운영

- 설치기간 : 2015. 5. 1. ~ 6. 1.
- 설치장소 : 세무2과 세무민원실
- 운영내용 : 지방소득세 업무와 인터넷 전자신고납부 안내

- 납세상담소 운영시간 연장 실시 (기간 : 2015. 5. 28. ~ 6. 1.)

일자	담당자	비고
2015. 5. 28.	장희선	
2015. 5. 29.	박현미	
2015. 6. 1.	양진영	

## V 행정 사항

- 전산정보과 및 공보담당관에 구청홈페이지(<http://www.sd.go.kr>), 성동구소식지 등을 이용하여 기한내 신고·납부하도록 홍보
- 관내 세무사 및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 홍보 안내문 발송
- 서울시 신고납부 현황 제출기한 : 2015. 7. 20.(월)

- 첨부
1.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 안내문(안) 및 유의사항 1부.
  2. ETAX를 통한 신고·납부 안내 1부.
  3.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실적제출 서식 1부. 끝.

##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번 신고·납부대상자는 2014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납세자로서 신고·납부 기간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과 동일한 '15. 5.1. ~ 5.31까지(성실 신고대상자는 6/30 까지)입니다. [단, 연말정산대상자 중 타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납세자는 소득세법 개정하여 2015. 6.30.까지 연장 / 2015. 5. 7 국회통과 예정]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시 함께 신고하며, 납세지는 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 자치구입니다.
- 국세청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와 동시신고를 통한 납부 및 서울시 E-TAX 시스템(<http://etax.seoul.go.kr>), 행자부 WeTax시스템 (<http://www.wetax.go.kr>)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으며,
- 가상계좌, 카드납부, 인터넷뱅킹, ATM, 스마트폰, ARS 등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내 미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10,000분의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납기 마감일에는 신고·납부 집중이 예상됩니다. 가급적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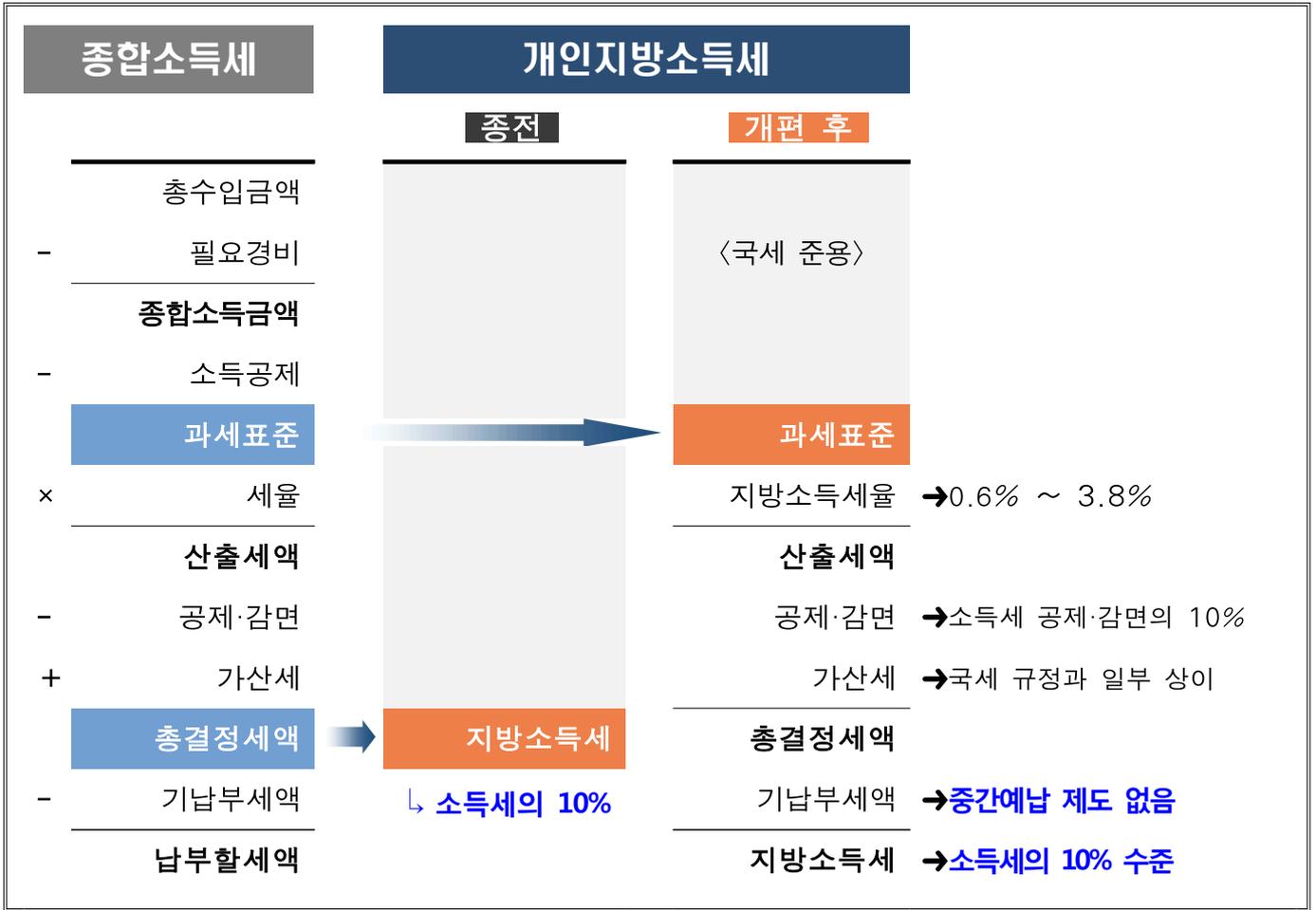
성 동 구 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2팀

☎ [02] 2286-6521~3

# '14년 이후 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종전 소득세 총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 왔으나, '14년 이후 과세기간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세율(0.6~3.8%), 세액공제·감면, 가산세 등 개편된 과세체계를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016년 말까지 종전과 같이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세액공제·감면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 세액공제·감면의 10% 수준으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시 아래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①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② 납세지는 종합소득세와 같습니다.

- 다만, 「소득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지 지정제도는 지방세 규정에 없으므로 종합소득세와 납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③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단,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④ 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의 10% 수준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0.6%
~ 4,600만원 이하	72,000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8,800만원 이하	582,000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1.5억원 이하	1,590,000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5억원 초과 ~	3,760,000원 +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⑤ 세액공제·감면은 종합소득세의 10%로 규정하였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공제·감면되는 경우 그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 ⑥ 가산세는 국세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등 국세와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가산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9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의 10%수준으로 계산되도록 5월 중 개정 예정입니다.

7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종전과 같이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합니다.

- 종전과 같이 세무서에 함께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서울, 세액공제감면 등 과세체계가 전면 개편되었으나, 최종 세액은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으로 계산되므로 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40호 서식)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개정 2014.3.14>
(31쪽 중 제3쪽)

관리번호

### (년 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4 세액의 계산**

구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금액 ㉑		
소득공제 ㉒		
과세표준(㉑-㉒) ㉓		④①
세율 ㉔		④② 10%
산출세액 ㉕		④③ ③①×10%
세액감면 ㉖		
세액공제 ㉗		
결정세액(㉕-㉖-㉗) ㉘		
가산세 ㉙		
추가납부세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㉚		
합계(㉘+㉙+㉚) ㉛		
기납부세액 ㉜		④④ (㉛-중간예납)×10%
납부(환급)할 총세액(㉛-㉜) ㉝		④⑤ ④③-④④
차감	납부특례세액 2년 내 ㉞	
	분납할 세액 2개월 내 ㉟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㉝-㉞-㉟) ㊱	④⑥ ④⑤

8 전자 납부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홈택스 신고납부시 지방소득세도 동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로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 가능하며,
- 이택스 및 위택스와 연계하여 인터넷뱅킹, 카드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시스템 개발중이며 5/16 이후 가능)

※ 이택스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https://etax.seoul.go.kr>)

위택스 (전국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www.wetax.go.kr](http://www.wetax.go.kr))

# [별첨2] ETAX를 통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안내

## □ ETAX 접속(<https://etax.seoul.go.kr>)

-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분 순으로 선택하여 → 납세의무자 정보 → 신고내역 → 산출세액 등 입력, 하단에 신고하기 클릭 → 납부



## □ 납부방법

- 계좌이체 : 전 은행(새마을금고는 6.2일까지 납부가능)
  - 납부시간 : 365일 24시간 가능(은행 결산·시스템 마감작업 시간 불가)
- 신용카드 납부
  - 납부시간 : 365일 24시간 가능(카드사 결산·시스템 마감작업 시간 불가)
  - 납부가능 카드 : 우리, BC, 삼성, 현대, 롯데, 신한, 외환, KB국민, NH, 하나, 씨티, 광주, 전북VISA, 제주VISA, 수협

※ 이 외 카드는 사용할 수 없음

**[별첨3]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실적 제출**

(○ ○ 구)

**신고·납부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납기후 포함(6.30기준)		2015. 5. 31일까지		비고
신고납세자	신고세액	신고납세자	신고세액	

**홍보 실적**

(단위 : 건, 개소)

인터넷	안내문 발송	지역신문·방송 등	납세상담소 설치	기 타

**기타사항(수범사례·제도개선 등)**